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불허 시 통지의무 신설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09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48호)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1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7. 5.	2024. 7. 8.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 7. 9.	2024. 7. 10.
최기상의원 등 12인	2024. 7. 18.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도읍의원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4조의4제7항)

2. 김남희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3. 최기상의원안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시 별도의
통지 및 불복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음.

개정안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illegible]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에----- -----.	----- -----법에----- -----.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법원----- ----- ----- ----- ----- ----- -----.	②법원----- ----- ----- ----- ----- ----- -----.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법원----- ----- ----- ----- ----- ----- ----- ----- ----- -----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③법원----- ----- ----- ----- ----- ----- ----- ----- ----- -----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	④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	④법원----- -----

<u>를 허가하는 경</u> <u>우에는 등사한</u> <u>소송기록의 사</u> <u>용목적 제한</u> <u>하거나 적당하</u> <u>다고 인정하는</u> <u>조건을 붙일 수</u> <u>있다.</u> <u><신 설></u>		<u>를 허가하는 경</u> <u>우에는 등사한</u> <u>소송기록의 사</u> <u>용목적 제한이</u> <u>나 그 밖에 적</u> <u>당하다고 인정</u> <u>하는 조건을 붙</u> <u>일 수 있다.</u> <u>⑤ 법원은 열람</u> <u>또는 등사를 허</u> <u>가하지 아니하</u> <u>거나 제4항에</u> <u>따라 조건을 붙</u> <u>여 허가하는 경</u> <u>우에는 열람 또</u> <u>는 등사를 신청</u> <u>한 자에게 그</u> <u>이유를 통지하</u> <u>여야 한다.</u>	----- ----- ----- ----- ----- ----- ----- -----. <u>⑤ 법원이 열람</u> <u>또는 등사를 허</u> <u>가하지 아니하</u> <u>는 경우에는 열</u> <u>람 또는 등사를</u> <u>신청한 자에게</u> <u>그 이유를 통지</u> <u>하여야 한다.</u>
<u>⑤ (생 략)</u> <u>⑥ 제3항 및 제</u> <u>4항에 관한 재</u> <u>판에 대하여는</u> <u>불복할 수 없다.</u> <u><신 설></u>	<u>⑤ (현행과 같</u> <u>음)</u> <u>⑥ (현행과 같</u> <u>음)</u> <u>⑦ 재판장은 열</u> <u>람 또는 등사를</u> <u>허가하지 아니</u> <u>하거나 제4항에</u>	<u>⑥ (현행 제5항</u> <u>과 같음)</u> <u>⑦ 제3항 및 제</u> <u>4항의 결정에</u> <u>대하여는 즉시</u> <u>항고를 할 수</u> <u>있다.</u>	<u>⑥ (현행 제5항</u> <u>과 같음)</u> <u>⑦ 제3항 및 제</u> <u>4항의 결정에</u> <u>대하여는 즉시</u> <u>항고를 할 수</u> <u>있다.</u>

	<u>따라 조건을 붙</u> <u>여 허가하는 경</u> <u>우에는 열람 또</u> <u>는 등사를 신청</u> <u>한 자에게 대법</u> <u>원규칙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u> <u>그 이유를 통지</u> <u>하여야 한다.</u>	
--	--	--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¹⁾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실질화하고 권리구제에 기여²⁾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제294조의4제6항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해자 등이 신청한

-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2) 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1., p.188.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항고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39조³⁾에 따라 불허의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아니하는바,⁴⁾ 열람·등사 신청이 불허된 피해자는 불허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복도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각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열람·등사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열람·등사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

내용	현행	김도읍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최기상의의원안
결정 이유의 통지	X	열람등사 불허 시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열람등사 불허 시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열람등사 불허 시 이유 통지
불복절차	X	X	<u>즉시항고 허용</u>	<u>즉시항고 허용</u>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6개월
열람·등사 결정 주체	재판장	재판장	<u>법원</u>	<u>법원</u>

3) 「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4) 다만, 재판예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는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재판예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19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③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열람·등사 불허결정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김남희의원안 및 최기상의원안의 경우 실무상 즉시항고가 있을 시 상급법원으로 재판기록이 송부되어 항고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재판절차가 실질적으로 정지되는데, 열람·등사의 반복 신청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업무 및 절차의 과다로 재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 10.) 등으로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개정안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판지연 방지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 진행 경과 및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김남희의원안 및 최기상의원안의 경우 열람·등사 결정의 주체를 현행 “재판장”에서 “법원”으로 변경하였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은 “법원”의 결정에 한정되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6조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재판에 대해서만 준항고가 가능하다는 점⁵⁾을 고려할 때, 불복절차 도입 시 열람·등사 결정의 주체를 “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5) 「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이와 관련하여, 제266조의4⁶⁾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범죄피해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02-6788-5063

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피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